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10.1~) 전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 민·관 협력을 통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를 사전 가동하면서, 5.19일(화)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6.3.31) → **법 시행(26.10.1)**

본 법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선제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해당 법령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동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최근 사이버 위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토스 등 인공지능 기반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의 참여를 즉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침해사고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 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 전까지는 ‘자문위원회’ 역할로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며, 법 시행 후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 및 운영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 위원회 첫 회의(Kick-off) >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하여,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여 법 시행 전 사전 운영을 통해 완결성 있는 가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지능화되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고속화·자동화·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 대응은 추가 피해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 라고 언급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대응 역량을 결집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격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 침해조사팀	책임자	팀장	김우철 (044-202-6490)
		담당자	사무관	김재남 (044-202-6493)
			주무관	김소담 (044-202-6494)